



2026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

(재)아산문화재단에서는 「2026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」을 통해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,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. 5. 22.

(재)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



2026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

I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4.~12.
- 지원대상
 - 아산 거주 만 19세(2007년생) 이상 예술인 및 아산 소재 예술단체
 - 관내·관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희망하는 예술인·예술단체
- 지원내용 : 예술인·예술단체 대상 분야별 창작활동비 지원
- 추진방향 : '모두가 있고, 잇는 예술'

지원 목적	지원 성격
지역예술인 '모두'를 지원 대상으로 창작활동의 안정화 도모	초기 예술가부터 중·성장 단계 예술가까지 전 창작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

II 추진 절차

1. 심사 및 선정(6월) 서류 접수·심사·선정	2. 교부신청서 작성(7월) 교부신청서 제출·검토	3. 보조금 교부(7월) 교부금 지급
4. 사업 진행(7월~11월)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	6. 정산 및 결과 보고(8-11월) 정산·결과보고 제출	6. 정산 및 결과 보고(8-12월) 교부 잔액 반납 및 사업 완료

※ 원천세·고용보험료 신고 업무를 고려하여,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Ⅲ 지원 계획

- 지원대상 : 2026년 ‘아산(관내)’ 혹은 ‘그 외 지역(관외)’ 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
 - ※ 예술창작 : 단순히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행위를 넘어 ‘예술적 가치를 지닌 결과물 내놓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
 - ※ 구분: 신작 창작, 재창작, 심화(기존 작품 수정·보완), 재해석 등

-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

구 분	자 격 기 준
공통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영리를 목적으로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·단체 · 만 19세 이상 아산시 거주 예술인 및 아산 소재 사업자등록 예술단체
신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술 활동 초기 단계의 예술인·단체 ·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인·단체 (예시) 지자체 및 문화재단 등 예술활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자(단체)
전문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술 활동 경력과 실적이 풍부한 예술인·단체 · 문화예술 관련 활동 증빙 3회 이상 증빙 가능한 예술인·단체
공통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창작·심화·재해석은 가능하나, 기존 발표작이 동일할 경우 (동일한 작품이 2026. 5. 1. 이전 발표된 경우 제외) · 순수 창작활동이 아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· 국공립 문화예술기관(박물관·미술관 등)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· 동아리, 취미활동, 공모작, 수상작 등은 제외 · 단순 버스킹 및 찾아가는 공연 사업 제외 · 회원전, 협회전, 학위 청구전 등은 제외 · 결과물이 오프라인 발표·전시·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·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(표절 및 복제 등) · 친목단체·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· 아산시 소재 외 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· 2026년 아산을 포함한 충남권 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(교부 예정)인 경우 (예시) 아산시청,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· 2025년 충남권 지원사업 수행 후 환수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경우

○ 지원 규모

분야		지원 예산	비고
문학		최대 5,000천원	*개인만 지원
시각		최대 5,000천원	
공연	음악	최대 10,000천원	
	무용		
	연극		
	전통		
다원		최대 10,000천원	

※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· 인원(개인/단체) · 유형(신진형/전문형) 차등 지급

○ 지원 분야

① 시각

- 평면 : 동양화·서양화·판화·서예 등
- 입체 : 입체·조각·설치 등
- 미디어 : 영상·미디어아트·사진 등
- 공예·디자인 : 공예·디자인·캘리그래피 등
- 디지털·융복합 : 디지털아트·일러스트·웹툰·공공미술 등

② 음악

- 기악 : 독주·실내악·관현악·국악기악(계승/창작) 등
- 성악 : 독창·합창·오페라·국악성악(계승/창작) 등
- 작곡발표 : 전 장르
- 대중음악 : 밴드·인디·재즈·힙합·실용음악
- 기타음악 : 음악 기반 예술 활동 발표

③ 무용

- 현대무용·한국무용(창작)·발레 등
- 실용무용·스트리트댄스 등
- 전통무용(계승/창작)·연희(계승/창작) 등

※ ‘계승’ 은 전통 원형의 재현 · 보존 활동이지만, 예술적 숙련 및 연구 · 복원 과정이 수반되는 창작활동으로 인정

④ 연극

- 연극 : 창작극·번역극·마임·년버벌(무언·비언어극)·인형극·아동극·창작뮤지컬 등
- 전통·실험극 : 마당극·거리극·창작극·융복합 퍼포먼스 등
- 기타 연극 : 연극 기반 예술 활동 발표 등

⑤ 다원: 복합장르·융복합예술·퍼포먼스·예술기술 융합

- 예술 장르 및 타 분야 간 융·복합 예술 형태
예시) 미디어 퍼포먼스·아트테크·기술예술 융복합 공연 등
- 참여형·실험예술 : 관객참여형·공간특화·프로젝트형 작업 등

⑥ 문학

지원 대상

- |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·시조 ▪ 소설·아동문학(장편·단편·청소년소설·동화 등) ▪ 수필·평론·희곡 ▪ 독립출판 : 문예지·시집·아트북·사진집 등 ▪ 기타문학 : 문학 기반 창작·발표 활동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26년 중 출판이 가능한 미출간 콘텐츠 보유자 지원 가능 ▪ 독립 출판 지원(소규모 출판물 제작) |
|---|---|

IV

공모 및 심사 계획

○ 공모 일정

공 고 기 간	· 2026. 5. 22.(금)~6. 12.(금)
접 수 일 정	· 2026. 6. 5.(금)~6. 12.(금) 23:59까지
접 수 안 내	· 재단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→ 일반공고
접 수 처	· 이메일 제출(any92@afac.or.kr)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심사 절차

1차 서류 심의	▶	2차 인터뷰 심의	▶	최종 선정 발표
2026. 6. 3주차 예정		2026. 6. 4주차 예정		2026. 6. 5주차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참고 1

예산 편성 기준

목	세 목	용 도	
인건비	개인 사례비	·최대 80만원 초과할 수 없음 [역할이 분명한 출연료, 기획료, 안무료 등]	
	단체(대표)사례비	·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[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출연료, 기획료, 안무료 등]	
	각종 사례비	·기획료, 출연료, 연출료, 편곡료, 저작권비, 작사료, 조율비, 헤어·메이크업 등 모든 인건비성 사례비	
	일일 사역	·단기 보조 인건비	
일반 운영비	사무관리비	·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소모성 구입비 (ex: 필기구, 용지, 케이블타이 등 일회성 소모품) ·작품을 위해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모성 재료비 (ex: 천, 비즈, 액자, 커튼 등 부재료)	
	행사 운영비	제작비	·행사를 위한 무대세트, 소품, 영상 제작비 ·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(완성본) (ex: 포스터, 웹포스터(SNS), 전단지, 리플렛, 현수막, 배너 등) ·결과물(책, 앨범, 서적, 도록, 작품집, 소식지 등) 제작비(발간) ※ 인쇄 부수는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 금지 (ex: 객석 수 400석 → 제작 부수 500부) ※ 기념품,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불가
		임차비 (대여)	·행사를 위한 장비 임차 (ex: 음향, 조명, 전기, 전자기기, 영상장비, 용달, 차량 등) ·행사를 위한 의상 대여 ·공간 대관료 (ex: 공연장, 전시장, 부대시설 등 대관료) ※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최소비용 권장
연금부담금 등	연금부담금	·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[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실시]	

※ 사업 규모 및 운영 내용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
(예시: 소규모 행사에 불필요한 운영·기술 인력 과다 편성 등)

○ 예산 편성 불가 항목

순번	내용
①	·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포괄적인 예산 편성 지양 ⇒ 예비비, 잡비, 사용제한 업종 등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과 관련없는 예산
②	·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<u>용역 및 하도급 예산 편성 불가</u>
③	· 자본적 경비(노트북, 카메라 등)로 물품 취득을 위한 경비 편성 불가
④	· 출장비, 교통비(택시, KTX 등), 주유비, 숙박비 등 답사를 위한 경비 편성 불가
⑤	· 회의비, 다과비, 업무추진비, 심사위원비, 자문위원수당 등 부대비용 불가

참고 2

활동 증빙자료 제출 예시



※ 활동 증빙 자료: 활동명(개인명·단체명), 사업명, 일시, 장소 4가지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
 ※ 위 예시 이미지와 같이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